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29
----------	---------

제출연월일	2006. 7. 18.
제출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4호)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1619호)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 타
- (1)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6. 5.11 ~ 5.31)결과 : 없음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전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5조의1(국외여행)을 제25조의2(국외여행)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을 “제26조의”로 하고, 제26조(겸직허가)를 제27조(겸직허가)로 하며,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거창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거창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정치적 행위)를 제29조(정치적 행위)로 한다.

제28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8조(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의회 의원
2. 군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 (— 공휴일 등 근무) ①----- -----<u>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u> ----- ----- -----<u>토요일 또는 공휴일</u>-----.</p> <p>②-----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 -----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 -----.</p>

<p>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3.20, 개정 2002.4. 24, 2004.8.13)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1997.3.20, 개정 2002.4.24, 2004.8.13)</p>	<p><삭 제></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 략) ②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 여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⑤(생 략) <신 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 ----- 제25조의 2의 ----- ----- ---. ③~⑤(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①~②(현행과 같음)</p>

제23조(특별휴가) ①~②(생략)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신설>

③-----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생략)

④~⑤(현행과 같음)

<삭제>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표창을 받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3. 청백 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을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개정 '96. 2. 27)

<삭제>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⑧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제>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생략)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1(국외여행) (생략)

<신설>

⑩(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제25조의2(국외여행) (현행과 같음)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거창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거창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

<p><u>제26조(겸직허가)</u> ①공무원이 <u>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u>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27조(정치적 행위)</u> ①~②(생략)</p> <p><u>제28조(시행규칙)</u> (생략)</p>	<p>는 것</p> <p>3. <u>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u></p> <p>4. <u>그 밖에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u></p> <p><u>제27조(겸직허가)</u> ①공무원이 <u>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u>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u>제28조(공무원의 범위)</u>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거창군의회 의원</u></p> <p>2. <u>군수</u></p> <p><u>제29조(정치적 행위)</u> ①~②(현행 제27조와 같음)</p> <p><u>제30조(시행규칙)</u> (현행 제28조와 같음)</p>
--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